

2023. 6. 7.(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2133-2410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승	2133-2761
담 당 자	박성훈	2133-2764
	김승리	2133-2763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8매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미인증 업체 견인유예 중단

- 6. 5부터 운전면허 인증 미이행 업체에 ‘즉시견인 1시간 유예’ 배제...시 차원 제재
- 학생 안전보호 등 사고예방 최선, 업계에 초·중·고교 인접도로 주차금지구역 설정 요청
- 한문철 변호사와 유튜브 영상 홍보·전국 최초 실기교육 실시...안전문화 정착 노력
- 이용자 안전에 대한 근본적 해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조속히 통과되어야

- 서울시는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배제하는 내용의 제재를 '23.6.5.(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 등 학생들의 무면허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의 관리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다.
- 지난 '21.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가 필수적이거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대부분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공유 기기를 대여할 수 있었다.

□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범칙금 10만 원을 납부해야 하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벌칙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 미이행 업체에 대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활용하여 제재를 시행한 것이다.

- 현행법상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는 필수인 반면, 업체의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 그러나 서울시는 면허 취득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청소년 및 무면허 이용자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유 업체에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는 '21.7.15.부터 전국 최초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무단 방치 시 보행자 통행에 현저히 방해가 되는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 즉시견인구역은 총 5개 구역으로 ① 보·차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②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④ 횡단보도 3m 이내, ⑤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이다.



① 차도 ② 지하철역 출구 ③ 버스 정류소 ④ 횡단보도 ⑤ 점자블록

-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은 평일 7시부터 20시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즉시견인구역의 경우 보행자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 신고 시 유예 시간 없이 견인하고 있으며, 그 외 시간대는 대여업체에서 1시간 내 이동 조치하지 않으면 견인하고 있다.

※ 출·퇴근시간 기준 : 출근시간 07:00~09:00 / 퇴근시간 18:00~20:00

- 기존에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즉시견인구역에 방치된 기기에 대해 공유 업계에 수거 기회를 부여하고자 1시간의 견인 유예 시간을 두었으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유예제도에서 배제된다.

- 서울시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데이터에 의하면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269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2,346건을 단속한 것에 비해 약 1.4배 많은 수치이다. 특히 이중 무면허 운전은 약 7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유 업계 차원의 노력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22.4월 및 '23.4월 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 비교

(단위 : 건)

기간	총계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승차정원 초과	등화 점등 불이행
범칙금		2만원	10만원	10만원	4만원	1만원
'22.4.1.~30.	2,346	2,176	30	106	24	10
'23.4.1.~30.	3,269	2,873	220	141	25	10

※ 음주운전의 경우 자전거 포함 단속 건수

(서울경찰청 제공)

- 또한, 서울시는 청소년 등 학생들의 무면허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우려하여,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계에 초·중·고교 및 학원가 인접도로에 대해 기기 반납 및 주차금지 구역 설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구간 내 기기 무단 방치 및 불법주차 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무면허 청소년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 지금까지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업체에 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해 왔고,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이 계류중으로 조속한 법률안 통과만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17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교통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 서울시 홍보대사 사유리가 함께 참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홍보영상을 지난 5월 제작함과 더불어, 전국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 실기 시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 서울시와 한문철TV가 협업해 제작한 콘텐츠는 다양한 블랙박스 제보를 통해 헬멧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보도 주행, 등화 미점등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며, 서울시 교육청, 각 구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 수칙 준수 등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시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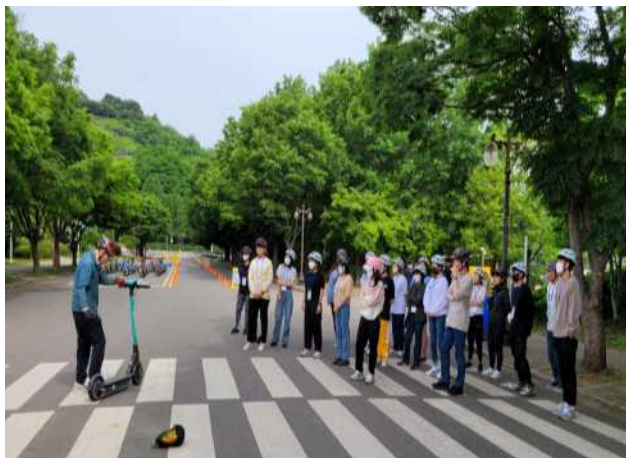
붙임 1**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구 분	내 용	위반 범칙금
기기 정의	속도 25km/h 미만 / 중량 30kg 미만	-
이용 자격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필요 / 만 16세 이상	10만 원
통행 방법	자전거도로 or 길가장자리구역	3만 원
안전 규정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2만 원
	음주운전 금지	10만 원 (측정 불응13만 원)
	승차 정원(1인) 초과 금지	4만 원
	약물 영향 등 정상 운전 불가 시 운전금지	10만 원
	야간 등화 미점등 or 발광장치 미착용	1만 원

붙임 2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현장 사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개인형 이동장치 PM

예절이 곧 안전!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6가지 이용예절

자전거 전용

01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

*원동기장치면허 이상

02 2인 이상 동승탑승 금지!

03 음주운전 금지!

04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에서는 보행자를 배려해주세요

05 안전모 착용!

06 배려하는 주차,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곳에!

주차 권장구역
자전거 거치대, 따릉이 대여소 주변등